

# 「필립스」(G. Edward Philips)의 “增價利益概念”에 관한 研究

高 成 孝\*

## 目 次

- |                           |
|---------------------------|
| I. 序 論                    |
| II. 利益決定理論에 관한 歷史的 論議의 背景 |
| III. 增價利益概念에 관한 分析的 考察    |
| 1. 序 說                    |
| 2. 會計理論의 進歩               |
| 3. 增價利益概念의 內容             |
| 4. 增價利益概念의 限界             |
| 5. 一般目的의 概念               |
| 6. 會計實務와의 關係              |
| IV. 增價利益概念의 特徵과 問題點       |
| V. 結 論                    |

## I. 序 論

企業利益은 가장 중요한 會計情報로서 企業利益의 決定問題와 관련된 利益의 本質 및 測定에 대한 수많은 論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概念을 正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不明瞭性 때문에 會計實務에 있어서도 利益情報의 測定·報告가 왜곡되어 會計機能이 제

\* 濟州大學校 會計學科 助教授

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會計擔當者는 물론 會計情報利用者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會計思考가 지배적인 오늘날의 會計實務에서 새로운 會計環境의 변화에 따라 會計上 많은 問題點들이 나타나고 있다. 會計實務上 새로운 會計裝置의 요청은 보다 근본적인 理論의 기반의 구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會計理論의 發展을 통한 會計實務의 改善努力이 그 동안 經濟學과 會計學에서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많은 논의를 개념적으로 통합한 理論定立이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서 企業利益의 決定에 관한 諸理論을 역사적인 考察을 통하여 會計思考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利益決定에 관한 광범한 研究의 단계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1960年代 初의 「필립스」(G. Edward Philips)의 “增價利益概念”<sup>1)</sup>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필립스」의 “增價利益概念”은 會計擔當者에 의한 財務報告를 하는 데 있어서 單一利益概念의 새로운 認識의 측면에서 하나의 報告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다. 會計理論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勸告案과 理論과 實務의 「갭」을 줄이기 위한 「스프라우스」(Sprouse)와 「무니츠」(Moonitz)의 ARS No.3에 뒤이어 나온 데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본 研究의 주된 目的은 「필립스」의 增價利益概念을 분석하여 利益概念을 정립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서 첫째, 利益決定과 관련된 논의의 背景을 歷史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필립스」가 제시하고 있는 會計理論의 進步, 增價概念의 意味와 限界, 單一利益概念의 問題 그리고 會計實務와의 關係를 다루며 마지막으로 그의 增加利益概念의 特徵과 問題點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Ⅲ. 利益決定 理論에 관한 歷史的 論議의 背景

오래 전부터 利益의 本質的인 定義와 測定에 관련된 諸 問題에 대해 많은 論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企業利益의 중요성에 비추어 利益決定에 대한 本質적인 構造關係를 파악하여 會計實務의 改善을 위한 本質적인 指針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構造關係를 해명하기

1) G. Edward Philips, "The Accretion Concept of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Jan. 1963.

2) Donald A. Corbin, "Comments on The Accretion Concept of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3.

위해서는 利益의 概念的 定義와 利益測定의 本質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企業의 利益決定은 利益의 本질적인 概念과 測定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利益概念은 測定目的에 따라 여러가지로 定義되어 왔지만 財務會計의 情報的 視點에서 利益概念은 統一性を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의 利益決定問題는 利益의 概念的 定義와 測定에 대한 本質의 이해와 그 構造關係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즈」와 「그리핀」은 利益의 定義와 測定에 대한 構造關係를 설명하면서 特定利益을 測定하기 위한 活用要素로서 測定單位의 선택, 持分理論, 不確實性, 法制環境 그리고 客觀性を 들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次元에서 이들 活用要素가 實證分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그러므로 會計實務에서 利益測定の 前提가 되는 概念的 논의에 대한 理論定立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논의를 다음의 利益의 本質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주장을 통합하는 일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이다.

利益의 本質과 測定에 대한 논의는 주로 經濟學者들과 會計學者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經濟學者들은 利益의 本質을 資本의 本質의 규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담·스미스」(A. Smith), 「마샬」(A. Marshall), 「핏서」(I. Fisher), 「헤이그」(R. M. Haig), 「피구」(A. C. Pigou), 「하이엑」(H. A. Hayek), 「힅스」(J. R. Hicks) 등에 의하면 資本維持概念에 의해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00年初 經濟理論을 會計에 접목시킨 계기가 된 「핏서」<sup>4)</sup>와 「캐닝」<sup>5)</sup>을 들 수 있다. 특히 「핏서」는 “資本과 利益의 本質”에서 資本과 利益에 대한 概念的 정리에 의해 합리적 기초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利益이야말로 모든 經濟問題에서 가장 중요한 役割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종의 經濟會計學의 哲學을 형성하고 實務上 기초적인 會計去來의 思考 및 그 利用과 추상적 經濟理論間의 연계關係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會計에서 企業의 利益測定을 測定目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利益測定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傳統的 會計의 測定手段이 안고 있는 問題解決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會計에서 利益測定은 測定上的 客觀性を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實質的 의미

3) Thomas H. Williams and Charles H. Griffin, "Income Definition and Measurement: A Structural Approach",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7.

4) Irving Fisher, The Nature of Capital and Income, (New York: Macmillan Co., 1906).

5) J. B. Canning, The Economics of Accounting, (New York: Ronald Press, 1929).

와 「갭」의 限界를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時代的 會計環境에 적합한 利益測定 方法을 추구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會計에서 利益 決定에 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중요한 課題로 생각된다.

① 1939, S. Gilman, Accounting Concepts of Profit.

② 1950, AICPA, Five Monographs on Business Income by the Study Group on Business Income.

③ 1961, Edgar O. Edwards and Philip 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④ 1963, G. Edward Philips, The Accretion of Income.

⑤ 1965, N. M. Bedford, Income Determination Theory: An Accounting Frame Work.

⑥ 1967, T. H. Williams and C. H. Griffin, Income Definition and Measurement: A Structural Approach.

⑦ 1970, R. R. Sterling edited, Asset Valuation and Income Determination.

여기에서 利益의 本質과 概念的 測定과 관련하여 「핏셔」와 「베드포드」의 理論을 비교·검 토하여 時代的 會計思考의 變化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利益決定의 構造的 關係와 새로운 利益測定理論을 제시한 「에드워드스」와 「벨」, 「필립스」, 「베드포드」 그리고 「윌리엄스」와 「그리핀」의 논문들은 利益概念的 統合理論 方向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企業利益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測定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經濟學者와 會計學者 들에 의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經濟學者들은 너무 理想的 思考方式을 갖고 있기 때문에 非實用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會計學者들은 너무 기계적인 思考에 의해 利益을 계산 하기 때문에 利益의 實質性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兩者의 調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利益測定方法은 물론 觀念的 思考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經濟學的 企業利益은 利益의 本質에 가까운 實質利益이라 할 수 있으나 利益測定은 主觀的 判斷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會計學的 企業利益은 主觀的인 要素가 배제된 測定上 客觀性을 가지고 있으나 實質的 意味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會計利益의 短點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實質利益에의 接近問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實質利益에의 接近可能性을 제시한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필립스」

의 增價利益概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Ⅲ. 增價利益概念에 관한 分析的 考察

#### 1. 序 說

「필립스」의 “增價利益概念”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目的을 가지고 그의 理論을 전개하고 있다.

- ① 會計理論의 進歩는 利益概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② 다양한 利益概念보다 單一利益概念으로서 增價利益概念이 적절하다.
- ③ 增價概念은 財務會計 뿐만 아니라 稅務 및 기타 會計領域에 적합한 一般目的概念이다.
- ④ 增價概念의 일반적 受容은 會計理論 뿐만 아니라 會計實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增價概念은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고 會計理論과 會計實務와의 연계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增價概念은 합리적인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할 수 있는 經濟力의 增加로서 利益을 정의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個人의 利益은 그 期間동안의 經濟力의 變化와 소비한 財貨 및 用役의 價値를 더한 것과 같고 기타 實體의 利益은 資本投資와 配分을 조정한 經濟力의 變化라 하고 있다.

增加概念은 測定上 客觀性의 限界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經濟力의 變化가 합리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시점을 시사해 주지 못하며 項目別 構成利益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그에 대한 불일치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增加概念의 취약점으로 보일 지 모르나 測定可能性에 대한 주의의 초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增價概念은 客觀的인 測定可能性을 강조하는 側面에서 經濟學的 利益概念과 다를 뿐만 아니라 慣習의 會計實務와도 다르다. 經濟學的 利益은 未來收益의 現價가 評價의 기초로서 강조된다. 未來收益과 割引率의 推定에 대한 主觀的인 問題는 價値測定으로서 市場價値를 강조하는 增價概念에 의해 극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慣習의 會計는 主觀的이지는 않지만 많은 價値變化를 인식하기 이전에 去來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지만 客觀的인 基準이라는 것이다.

## 2. 會計理論의 進歩

오늘날의 經濟社會에 있어서 기업의 會計實務를 지도하는 會計原則(會計基準)은 會計理論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러한 會計原則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합하게 되도록 기존의 會計原則에 대한 問題點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經濟社會의 發展에 따라 그 會計環境에 적합한 會計原則에 대한 理論的인 進歩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필립스」는 現行 會計原則에 대한 폭넓은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개념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單一化”對 “多樣性”의 문제로 보고 있다. 모든 企業이 同一實務를 따르도록 統一性(單一化)의 달성을 주장하는 會計擔當者는 거의 없지만, 그 代替案으로서 健全성에 일반적 동의를 가지고 각 企業에 건전한 實務를 따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체적인 會計實務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理論的 기반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開發은 利益概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에서 의미있는 論爭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利益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무엇을 認識해야 하는 지에 대한 差異點에서 알 수 있다.

「필립스」는 지금까지 會計理論의 進歩에 많은 혼란을 가져온 思考로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서로 다른 目的에 따라 다른 利益概念이 있어야 한다. 둘째, 對應原則이 利益理論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思考 모두 再檢討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첫째 思考가 불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單一利益概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一般目的概念을 주제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收益·費用의 對應概念은 계속성의 전제하에 그 有用성이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그 건전성에 대해서는 異論을 제기하고 있다. 즉 對應概念은 현재 수용되고 있는 實現主義概念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對應概念은 利益理論의 기초라기보다 實現主義에 대한 독단적 定義를 불가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美國公認會計士會」의 「ARS」는 會計公準, 會計原則의 상호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지만, 會計에서 가장 중요한 問題인 利益概念을 다루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니츠」(Moonitz)는 利益測定은 富의 增加에 대한 測定을 의미하지만 評價理論이나 資產·負債의 價值 및 그들의 關聯概念의 부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評價理論은 利益의 定義를 필수로 하며, 會計理論은 利益을 정의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립스」는 會計理論과 進歩가 利益概念의 多樣性보다는 單一利益概念의 개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單一利益概念은 다양한 意思決定을 하는 다양한 利害關係者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會計擔當者는 많은 서로 다른 用途에 다양한 資料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지적은 하나의 利益概念 이상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미있는 利益概念에 대한 同意는 會計擔當者의 財務報告機能의 改善이 필요하며 特殊意思決定에 적합한 資料를 蒐集·分析·解釋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3. 增價利益概念의 內容

「필립스」는 會計原則의 基礎概念으로서 增價概念을 논의하고 있다. 增價概念은 經濟學과 會計文獻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널리 제시되어 온 歷史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創案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會計專門家가 財務報告問題를 다룰 때 規範的 基準 또는 指針으로서 增加概念에 대한 認識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利益概念은 實務에서 合理的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될 수 있어야 유용한 것이다. 富나 利益의 測定에 있어서 測定上의 客觀性과 概念의 健全性間의 불가피한 갈등이 基本的인 問題가 된다. 그는 “實質性”과 “客觀性”間의 상충적인 갈등관계를 다음의 다섯 가지 利益概念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① 心理的 利益 (psychic income) : 순수한 主觀的 利益으로서, 效用에 기초를 두어 消費와 분리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개념이다.

② 經濟的 現價利益 (economic present value income) : 非經濟的인 要素를 제외하여 客觀性을 갖는 利益으로서, 價値는 未來收益에 의존한다.

③ 增價利益 (accretion income) : 合理的인 客觀性을 갖고 증명될 수 있는 經濟力의 增加를 말하며 經濟力의 測定은 일차적으로 市場價値에 의존한다.

④ 發生主義 會計利益 (accrual accounting income) : 豫測과 市場價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價値變化를 인식하기 이전에 外部去來를 필요로 한다.

⑤ 現金主義 會計利益 (cash basic accounting income) : 엄격히 客觀的이며 現金에 의한 實現主義를 필요로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利益概念 가운데 利益의 本質에 가장 가까운 心理的 利益에서 現金主義 會計利益에 이르는 順序대로 “實質性”의 序列을 나타낸다. 그러나 “客觀性”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반대의 順序대로 心理的 利益이 가장 낮은 順位가 된다.

心理的 利益은 人間の 欲求充足의 観点에서 본 利益으로 個人이 생각하고 있는 效用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實質利益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지만 主觀的 利益으로서 실우적 側面에서 測定에 대한 客觀性이 결여되어 있다.

經濟學的 現價利益은 經濟的 富의 增加로서 財貨와 用役의 純流入을 통한 經濟的 價値의 增大에 의해 얻은 利益을 말한다. 이러한 經濟的 價値는 資産으로부터 창출될 것이 기대되는 未來純收益을 現價로 계산한다. 이러한 利益概念은 目的適合한 要素를 가지고 정의한 것이지만, 未來收益과 割引率이 未來 不確實性의 要素로서의 測定에 있어 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未來收益을 豫測하고 적절한 割引率의 선택에 있어서 높은 客觀性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增價概念은 未來收益의 現價에 의한 經濟學的 概念과 대조적으로 經濟力의 測定에서 市場價値를 기초로 한다. 이것은 좀더 큰 測定上의 客觀性을 얻기 위하여 概念的 健全性을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經濟的 現價利益에 비해 增價概念에 대한 客觀性의 優越性은 概念的 健全性의 損失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問題는 增價利益에 비해 現行實務(發生主義 會計利益)에 대한 客觀性의 得이 概念的 健全性에 수반되는 損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

「윌립스」는 經濟學的 利益, 增價利益, 그리고 發生主義利益概念 사이의 원칙적인 差異點을 實現主義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經濟學的 現價利益은 實現主義와 관계없이 利益은 資産의 眞實價値의 증가를 통하여 나타난다. 增價概念은 價値의 增加가 合理的으로 測定可能할 때 利益의 認識은 增加된 市場價値를 반영한 것으로서 實現主義의 條件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利益은 資産이 객관적으로 測定可能한 市場價値가 존재할 때 실현된다. 現行 會計實務에서는 보다 엄격한 實現主義를 요구하고 있는데 利益은 실재적인 市場去來가 있을 때만 인식된다. 이들 差異點은 株主의 利益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정 會計期間의 經濟學的 利益은 株當 價値變化의 조정에 의해 받게 될 配當額이며 그 價値는 期待未來配當을 現價計算으로 측정된다. 增價利益은 市場價値變化를 조정한 配當額이 된다. 그리고 發生主義會計는 보통 현재까지 배당된 利益을 포함하여 실제 持分變化時 價値變化가 인식된다.

客觀性은 기대되는 未來收益을 할인한 것보다 市場調査를 통하여 測定할 때 분명히 이점이 있다. 割引收益에 비해 市場價値를 이용한 결과가 중대한 概念的 損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市場에서 모든 사람이 未來收益을 동일하게 豫測하고 동일한 割引率을 적용했다면, 市場價値는 現價가 동일하게 될 것이며 增價利益과 經濟的 現價利益間의 差異는 전혀 없을 것



이다. 市場價値는 다양한 推定과 割引率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며, 더우기 經濟力은 市場價値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投資家는 特定 證券으로부터 未來收益의 現在價値가 市場價値를 초과할 때 投資를 할 것이지만, 市場價値가 上昇하거나 收益이 實現될 때까지 그에 상응한 經濟力을 갖는 것은 아니다.

增價利益의 定義에서 “合理的으로 客觀性을 가진”이라는 표현이 불만족스런 理由는 合理的 客觀性에 대한 判斷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概念의 주된 長點은 損益과 財務狀態를 測定하는 方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會計擔當者의 問題를 해결하여 주지 못하지만 일차적 고려대상은 概念的 健全性보다 測定上 客觀性의 問題에 있는 것이다. 財務報告와 관련하여 계속되어온 在庫資產評價에 대한 論爭은 적절한 利益測定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問題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利益이란 무엇인가?, 둘째, 客觀性의 필요성과 최선의 測定方法은 무엇인가? 두번째 관점에서 測定上 客觀性의 必要性 때문에 測定하고자 하는 利益과 얼마나 유리되느냐 하는 問題의 結論을 맺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 問題의 解答은 制度的 構造와 帳簿記錄의 技術에서 새로운 發展의 變化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첫째 관점에 대한 폭넓은 受容이 되어야 하는데, 測定하고자 하는 對象에 대한 同意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測定方法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利益이 收益과 費用을 對應시킨 결과라고 한다면 최선의 對應作業을 행함으로써 이들 代替案의 長點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增價利益은 測定上의 客觀性和 經濟的 實質性的 寫體(surrogate)間的 최선의 均衡을 유지할 수의 利益評價方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增價概念下에서 在庫資產(또는 다른 資產이나 負債) 價値의 變化가 合理的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하여 計定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增價概念이 수용된다면, 原價主義나 時價主義를 적용하건 간에 理論上의 問題가 아니라 實用性의 問題가 나타난다. 市場이 충분한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可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용되어야 한다. 만일 市場이 거부된다면, “理想的” 概念의 近似值로 客觀性의 均衡을 필요로 하는 原價主義가 선택이 된다. 여기에서 增價利益이 理想的의(代替的 實務的 長點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規範的 基準이나 指針) 方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發生主義 會計利益은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實務에 의해 측정되는 이익이다. 收益에서 費用을 초과한 利益으로서 收益·費用의 對應概念이 會計利益概念으로 나타내고 있다. 對應概念을 利益概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 觀點에서 實現主義의 定義를 필수불가결하게 하

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實現主義의 주장을 고집 하지 않는다면 對應概念과 관련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增價概念이 經濟力의 變化가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될 때 認識(實現)된다는 의미에서 實現主義概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實現主義 관점에서 增價와 發生主義會計間의 差異點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增價概念에 있어서 收益과 費用 모두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할 때 認識되고 그것이 반영되는 期間에 결정되며 去來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增價概念은 하나의 基準이나 指針으로서 가장 큰 潛在力을 갖고 있으나 實務에서 최선의 方法이거나 處方은 아니다. 즉 價値를 객관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利益을 이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問題는 對應概念을 기초로한 利益理論을 구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合理的이며 客觀的인 理想的 價値測定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現金主義 會計利益은 實現主義를 극한적으로 이용하며 客觀性的 利益은 실질적이다. 즉 엄격한 現金主義下에서 減價償却과 貸損推定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여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經濟的 實質性을 충분히 묘사해 주지 못하는 결점이 있는 것이다.

#### 4. 增價利益概念의 限界

利益과 財務狀態의 測定에 있어서 增價概念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問題領域이 있다고 한다.

- ① 實體를 定義하는 것.
- ② 貨幣價値의 變化를 조정하는 것.
- ③ 總利益과 營業利益을 구분하는 것.

增價概念은 利益을 測定하고자 하는 實體가 정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實體는 아주 명료하지만 종종 概念的 問題가 나타난다. 어떤 企業이 所有主와 분리된 課稅가능한 實體인가 하는 것에서 所得稅에 대한 問題에서 나타난다. 增價概念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의 몇 가지 側面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의 持分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持分增加를 利益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서 설명된다.

貨幣價値의 變化는 增價概念에 무시된다. 物價水準變動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이 實現主義의 엄격한 고집에 기인한 것이다. 資産에 대한 物價水準의 점차적 變動의 效果는 利益의 혼돈

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모두 실현된다. 이것은 物價水準의 上昇에 상응한 실질적인 價値增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야기되는 혼돈은 自然된 實現主義에 의해 제기된다는 것이다.

物價水準變動의 問題는 營業利益과 特別利益의 구별과도 연관성이 있다. 增價概念은 效率的 經營으로부터 기인한 利益과 臨時的으로 얻어진 利益을 구별하지 않는 包括主義概念이다. 그러한 區分은 많은 財務諸表의 利用者에게 有用하고 會計擔當者는 그러한 目的에 이용될 수 있는 資料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營業利益이 會計利益의 基礎概念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會計擔當者가 非正常的인 價値變化를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중요한 非正常的인 營業內容이 기록되기 이전에 합리적 客觀性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예를 들면 在庫資産의 價値上昇(현재 또는 차후에 認識되거나 實現될 때)이 非正常要因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增價概念이 수용되고 전체적 實體의 成長을 利益으로 보고한다면 營業利益을 분리하려고 할 때보다 더 큰 客觀性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5. 一般目的概念 (An All-Purpose Concept)<sup>6)</sup>

單一目的概念을 반대하고 利益概念의 多樣性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利益測定의 目的과 測定에 대한 接近方法이 많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다양한 目的과 가능한 여러 接近方法이 제시되고 있다 할지라도 몇 가지 概念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적인 證據는 없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會計情報利用者들이 각자의 目的에 적합한 서로 다른 형태의 情報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준하는 많은 利益概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會計擔當者의 두 가지 業務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하나는 特定實體의 損益과 財務狀態의 測定이며, 다른 하나는 意思決定을 위해 目的適合한 情報의 蒐集과 解釋을 하는 일이다. 會計擔當者가 제공하는 現金 및 資金흐름, 差額原價, 그리고 變動費 등과 같은 다양한 情報의 必要性이 利益概念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있는 利益概念에의 同意는 財務報告의 改善이 필요하며, 이러한 概念이 特殊意思決定에 적합한 情報의 蒐集·分析·解釋하는 데 본질적으로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

租稅와 財務報告目的에 대한 적합한 利益測定問題(異同)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增價概念은 租稅와 財務報告의 類似性 때문에 가장 적절한 利益概念이라고 한다. 이는 租稅問

6) 여기에서 사용한 一般目的概念이라 함은 모든 目的에 적합한 單一利益概念을 뜻한다.

題를 研究하는 사람들이 사용해 왔으며,<sup>7)</sup> 그 일반적 概念은 「헤이그」와 「사이몬」 이후 “Haig-Simons” 利益概念으로 불리어져 왔다.<sup>8)</sup> 이 概念은 특히 所得稅의 改革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시키는 데 적절하다는 것이다. 租稅目的은 公正性이나 平等性, 바람직한 經濟效果, 그리고 管理的 實行可能性을 포함한다. 經濟的 實質性和 客觀的 測定可能性間的 會計問題는 公正性和 管理的 實行可能性間的 租稅問題와 동일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會計 및 租稅 모두에 대한 指針으로 이용되는 基本的 利益概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客觀的인 利益에 대한 接近方法의 問題와 利益의 本質問題를 분리시킴으로써 租稅와 會計論爭의 問題를 說明할 수 있다는 것이다.

租稅의 社會的·經濟的 效果와 관련된 目的은 會計利益과 동일화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概念의 健全性和 測定上의 客觀性의 必要性은 양쪽 모두의 同質적인 問題라는 것이다.

國民所得測定에 있어서도 다른 利益概念의 必要性을 논의하여 왔지만, 다음의 結論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① 增價概念은 國民所得의 一般概念과 모순되지 않는다.

② 다양한 여러 實體의 增價利益에 대해 익숙할수록, 國民所得도 더 쉽고 精確하게 測定할 수 있다.

國民所得의 測定은 概念的 難點을 갖고 있으며 國民所得을 계산하는 會計道具의 이용상의 문제도 있다. 가장 중요한 개념적 問題는 總計와 實質性 그리고 貨幣測定을 포함한다.

개념적으로 總計는 중요하지 않으며, 問題는 部分의 眞實性이 全體의 眞實로 나타나지 않는 데 있다. 예를 들면 相對的價格變動은 全體經濟가 아닌 여러 實體의 實質損益의 結果를 가져온다. 그리고 支配·從屬會社間的 去來는 聯結實體가 아닌 각 實體의 財務狀態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단순한 貨幣利益과 實質利益을 구별은 物價水準變動이 중대한 개념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增價利益은 物價水準變動問題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客觀性의 必要性은 國民所得의 總計計算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相對的 物價變動의 效果가 서로 상쇄된다는 사실은 그 變動의 영향과 분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물론 一般物價水準을 定義하고 測定

7) 예로서, Robert Murray Haig, "The Concept of Income: Economic and Legal Aspects," in R. M. Haig (ed.) *The Federal Income Tax*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1), p.17, and Richard 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Y.: McGraw-Hill Book Co., Inc., 1959), p.165.

8) R.M. Haig, *op. cit.*, and Henry C. Simons, *Personal Income Tax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8).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增價概念의 基本思考는 合理的 測定可能性을 가지고 測定되는 經濟力의 變化가 利益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國民所得을 測定할 때 마음속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이다. 經濟內 모든 實體의 범위내에서 實體利益을 合計하여 國民所得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增價概念은 國民所得과 實體利益의 測定資料의 改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利益測定에 대한 論爭은 다양한 利害關係가 있는 여러 分野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納稅者와 政府, 勞組와 經營者, 株主와 消費者 그리고 經營者와 株主 등의 경우이다. 이러한 論爭에서 각 集團의 特殊利害關係者들은 자기 期待結果에 따른 計算方法에 편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利益概念의 多樣性을 正當化시키는 것이 아니라 單一利益概念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增價概念은 經營者의 目的인 “利潤極大化” 概念과 아주 밀접하다. 經營者가 企業의 經濟的地位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增價概念의 이용에 초점을 둘 수 있다. 增價利益에 의해 會計擔當者는 經營者가 관심을 갖는 것을 측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經營者가 利潤極大化를 시도할 때, 增價利益에 접근하는 것이 管理的 意思決定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6. 會計實務와의 關係

增價概念에 대한 受容이 現行 會計實務의 革新的인 變化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增價概念은 方法上의 客觀性和 統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經濟的 實質性과의 괴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 하는 問題解決을 필요로 한다. 가능한 會計實務의 變更에 대한 다음의 논의에서 實務의 중요한 變化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논의는 客觀性的 중대한 損傷없이 損益과 財務狀態를 보다 이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現金은 利益測定上 중요한 問題가 없다. 그 價値는 客觀性和 經濟的 合理性의 側面에서 고도의 測定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受取債權의 경우는 이미 現行實務에서 增價概念에 따르고 있다. 受取債權은 일반적으로 貨幣金額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는 價値增加의 문제는 없다. 貸損 및 現金割引 등과 같은 減少要因에 의해 합리적으로 測定될 때 價値減少가 인식된다.

市場性 短期有價證券은 합리적인 경우에 市場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評價는 底價主義가 적용되고 있다. 增價概念에서는 時價가 原價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할 때 사용할 필요가 있다.

時價가 충분한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可能한 지의 여부는 實現主義보다 利益認識의 문제인 것이다. 去來에 의해 實現利益을 인식하고 있는 現行實務의 선호이유는 眞實價値의 實現時期의 이유라기보다는 時價가 합리적 측정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增價概念은 會計擔當者의 客觀性에 대한 實務의 判斷을 필요로 한다. 한편 現行實務는 原價보다 높은 價値增加에 대해 충분한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하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時價가 合理的 客觀性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增價概念은 市場性 有價證券에 대해 중요한 會計效果가 있을 것이며 會計實務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在庫資產도 有價證券과 같은 이유가 적용된다. 原價와 다른 價値가 합리적 客觀性을 가지고 측정될 수 있을 때는 測定에 반영되어야 한다. 時價가 原價보다 더 큰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在庫資產에 대해 原價나 價値에 의한 貨幣金額의 割當은 推定을 포함한 誤謬의 限界가 있다. 原價測定の 本質的 脆弱點과 價値測定の 相對的 長點에 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

在庫資產原價를 측정하는 데 있어 원칙적인 어려움은 配分의 문제에 있다. 그리고 原價의 測定에 있어서 또 다른 고유의 脆弱點은 적절한 原價決定의 문제이다. 이것은 대부분 「LIFO」論爭에서 나타난다. 「LIFO」는 조작적 利益柔軟化(income smoothing)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在庫資產價値의 變動結果로 實質損益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收益·費用의 부적절한 對應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성이 없는 原價測定の 기본적 理由는 原價配分이 價値와 관계없이 건전하게 입증될 수 없는 데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時價測定の 어려움도 강조된다. 광범위한 在庫資產은 時價로 쉽게 측정될 수 있는 原資材와 商品으로 구성된다. 販賣時期와 條件이 불확실할 때 半製品과 完成商品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 합리적 原價配分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原價가 價値보다 더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客觀性을 근거로 原價主義를 강조하는 것은 在庫資產보다 固定資產에서 더 나타난다. 固定資產은 상대적 特殊性과 非反復的 交換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時價評價는 전형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價値에의 가장 합리적 接近置로서 原價主義에 대한 집착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價値에서 중요한 變化가 합리적 客觀性을 가지고 측정될 수 있을 때 原價가 方法上 一慣性이나 統一性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어떤 實體가 原價를 기초로 固定資產을 보고할 때, 다른 實體가 다른 時點과 다른 價格으로 資產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比較可能性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보편적인 原價主義는 합리적 利益測定이나 比較可能性을 달성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엄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價値變動을 반영할 경우에 개념적으로 利益測定과 比較可能性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增價概念은 特許權과 研究開發費와 같은 無形資産에 대한 實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들 項目은 增價概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測定價値를 초과할 때 保守主義를 옹호하지 않고 名目上 金額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增價測定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無形資産에 대한 합리적 測定價値가 原價를 초과할 때 增價概念은 現行實務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增價概念에 대한 일반적 受容은 會計實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客觀性의 損失보다 利益이 될 것이며 比較可能性의 향상 뿐만 아니라 經濟的 合理性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 IV. 增價利益概念의 特徵과 問題點

會計擔當자들이 經濟的 實質性에 적합하고 合理的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될 수 있는 收益概念에의 일반적 同意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會計理論과 會計實務의 改善은 성취할 수 없다. 增價概念은 그러한 요구에 적합한 利益概念으로서 收益·費用對應概念의 問題點은 現行實務의 多樣性和 理論的 論爭에서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利益測定目的이 多樣性을 주장하지 않고 損益과 財務狀態의 測定을 필요로 하는 경우 單一利益概念이 적합하다. 이러한 單一利益概念이 모든 意思決定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sup>9)</sup>

이것은 會計理論의 進歩가 利益概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主張과 함께 利益概念의 多樣性보다는 單一利益概念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單一利益概念은 다양한 利害關係者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特殊意思決定에 필요한 情報提供은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會計擔當者の 財務報告에 있어서 새로운 認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報告革命(reporting revolution)<sup>10)</sup>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增價利益概念은 合理的 測定可能性의 側面에서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情報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財務報告 이외에 租稅, 國民所得測定 그리고 管理的 意思決定을 포함한 많은 領域에

9) Philips, op. cit., p.25.

10) Corbin, op. cit., p.742.

서 적용가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익은 본질적으로 經濟的 價値를 추구하는 實質利益 (real income)을 利益概念의 元體 (principal)라고 할 수 있다. 여러 學者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바이지만 「렘케」 (Lemke)<sup>11)</sup>도 經濟學的 實質利益의 優越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概念的 健全性을 目標로 한 利益의 測定·報告의 改善을 위한 여러가지 利益概念 즉 元體에 대한 寫體 (surrogate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實質利益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하나의 예가 「필립스」의 “增價利益概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다섯 가지 利益概念의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립스」는 概念的 眞實性과 測定上 客觀性 사이의 갈등은 利益研究에서 불가피한 原則的인 問題로 보고 있는 것이다. 會計擔當者가 會計實務의 健全性을 판단하는 手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高층은 實質性과 測定上의 客觀性 兩面의 필요성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價値 對 原價”, “主觀性 對 客觀性”, 또는 “經濟的 利益 對 會計利益概念”에서 나타난다.<sup>12)</sup>

「필립스」는 增價利益을 合理的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될 수 있는 經濟力의 增加로 정의하고 있다. 經濟力은 測定上 보다 큰 客觀性을 얻기 위하여 割引收益보다 資產의 市場價値에 의해 測定된다. 그는 增價利益보다 經濟學的 現價利益이 概念的 優位性을 인정하면서도 增價利益이 測定上 훨씬 더 客觀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現行會計實務에서 인정되고 있는 發生主義 會計利益은 對應概念에 利益測定을 하고 있는데 概念的 健全性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對應概念은 利益概念을 위해 필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實現主義에 대한 임의적 정의의 一慣性을 관찰시키기 위한 것이다.

客觀性의 근거로 增價利益概念을 정당화시키면서, 「필립스」는 市場價値가 없이는 經濟力이 존재할 수 없으며 增價利益은 代替的 實務의 長點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規範的 基準 혹은 指針이 되는 “理想的 利益概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資產은 現在 존재하는 것이므로 현재 市場價格을 알 수 있다면 그 資產價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資產價格은 미래의 획득될 經濟用役 뿐만 아니라 이들 用役의 市場豫測과 市場利子率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같은 주장은 經濟的 現價利益의 概念的인 優位性의 견지에서 增價利益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는 資源의 이상적인 測定을 선언한 現行交換價値 (current exchange value)

11) Kenneth W. Lemke, "Asset Valuation and Income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Jan., 1966), pp. 33 ~ 34.

12) G. Edward Philips, "The Revolution in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3), p. 697.



의 近似價를 구하기 위해 未來利益을 추정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13)</sup>

「필립스」는 市場價値나 現行交換價値가 資源의 理想的인 測定으로 생각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資產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의 價値基準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만일 어떤 종류의 資產을 급히 賣却하려 할 때, 殘存 또는 清算價値가 實質價値보다 낮게 되기 때문에 繼續企業으로서 企業價値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會計擔當者가 측정하게 될 現行交換價値는 市場代替原價를 上限으로 하고 清算價値를 下限線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現行交換價値는 이러한 限界內에 있게 되며 개념적으로 보면 合理的인 사람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資產을 구입하려고 하는 金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립스」의 現行交換價値는 單一概念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複數概念인 것이다.<sup>14)</sup>

그리고 增價概念은 現行 會計實務의 혁신적인 變化를 이루지 않고 수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지 부분적인 現行實務의 變更를 통하여 客觀性的 中대한 損傷을 초래하지 않고 損益과 財務狀態를 보다 이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在庫資產과 固定資產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保守主義에 의한 低價主義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現行 會計實務에서 實質損益과 과리된 會計情報의 問題에 대하여 代替原價會計 등 實質利益에의 접근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增價利益의 限界로서 實體의 定義, 物價水準變動, 그리고 營業利益과 特別損益의 분리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필립스」는 物價水準의 變動問題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貨幣價値變動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필립스」의 增價利益概念은 實質的, 實用的, 單一의 一般目的利益概念으로서 이론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 V. 結 論

이상에서 利益決定理論을 統合定立하기 위한 부문적인 研究로서, 利益決定에 대한 歷史的 論議의 背景을 간단히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필립스」의 增價利益概念의 內容을 고찰하고 增價概念의 特徵과 問題點을 검토하였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會計環境에 따라서 會計情報의 有用性を 증대시키는 일은 會計理論의 發

13) Lemke, op.cit., pp.34 ~ 35.

14) Ibid., p.35.

展을 통하여 會計實務의 基盤을 개선하는 데 있다. 즉 傳統的 會計機構에 의한 利益情報은 實質的 의미를 잃고 있으며 實質意味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새로운 會計裝置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利益決定理論은 개념적 實質性에 관련된 概念定立과 客觀的 測定可能性의 問題를 다룬 논의의 배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부분의 논의는 測定上의 客觀性이 없는 概念的 健全성과 概念的 健全성이 있는 測定上의 客觀性間의 概念選擇 問題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問題解決의 「딜레마」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필립스」는 現行 會計實務의 改善를 위한 會計理論의 進歩를 강조하고 있으며, 理論의 進歩는 利益概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利益概念은 多樣性보다는 單一利益概念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향하여 經濟的 實質利益에의 접근을 도모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單一利益概念으로서 개념적 健全성과 測定上 客觀性을 달성할 수 있는 增價利益概念은 이론적으로 건전하고 會計實務에서 財務報告機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增價利益은 합리적 客觀性을 가지고 測定할 수 있는 經濟力의 增加로 정의하고 市場價値에 의해서 經濟力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필립스」의 增價利益概念은 會計에서 전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단지 財務報告, 租稅 國民所得測定 그리고 特殊한 經營意思決定會計 등에서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 增價利益은 現行 發生主義 會計利益에 비하여 實質利益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특히 物價水準變動 등의 요소에 따른 測定上의 客觀性問題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實質利益에의 추구에서 나타나는 問題는 客觀的 測定可能性의 달성이며, 이는 앞으로 利益의 測定 및 報告에 대한 理論基盤의 구축에 따라 새로운 會計制度와 技術의 개선으로 극복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